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조정

○ 수입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면제대상 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추가

○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공시지가로 통일

검토의견

○ 도시지역의 주차난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위하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설치자가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노천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시·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전용시설용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것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토록 충청북도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다고 사료됨.